

# 전임교원성과연동호봉제운영규정

제정 2025.11.01.  
<교무팀>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「교직원보수규정」 제2조에 따라 동명대학교(이하 ‘대학’ 이라 함)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성과연동 호봉제 적용 대상 교원의 보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「교원인사규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2025년 11월 1일자로 연봉제에서 성과연동 호봉제로 전환되는 교원과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 (정의)** 성과연동 호봉제란 호봉제에 기반하여 보수를 인상하는 것 외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수 인상을 연동시키는 보수 체계를 말한다.

## 제2장 보수 체계와 구성

**제4조 (보수의 구성)** ① 월 보수는 기본봉급, 상여수당(기본봉급의 30%), 연구보조비, 교과연구비,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명절상여금은 기본봉급의 30%를 연 2회 명절마다(설, 추석) 지급한다.

③ 성과상여금은 당해 연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별도로 지급하되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급여일에 지급한다.

④ 기타 수당(가족수당, 보육수당, 보직수당 등)은 「교직원보수규정」에 따라 월 보수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 (보수 구성항목별 지급 기준)** ① 기본봉급, 상여수당, 월 보수 총액은 [별표 1]과 같다.

② 연구보조비는 [별표 2]와 같다.

③ 교과연구비는 [별표 3]과 같다.

④ 정액급식비는 [별표 4]와 같다.

⑤ 사학연금, 건강보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한 사회보험의 개인부담금과 각종 세금은 월 보수에서 공제한다.

**제6조 (국가전문자격소유자 수당)** 국가전문자격소유자(의사, 수의사)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3장 호봉 확정

**제7조 (신규 임용 교원 등의 호봉 확정 기준)** ① 신규 임용 교원의 경우 임용 첫 해 호봉은 호봉 확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.

- ② 신규 임용 교원의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은 제12조제1항제3호에 준하여 지급한다.
- ③ 대학은 호봉을 산정할 때 그 내용과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신규 임용 교원의 호봉 확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8조 (호봉 재확정)** ① 교원이 승진 임용될 경우, 승진 후 호봉은 승진 전 호봉과 동일한 호봉으로 확정한다.

- ② 재직 중인 교원이 초임호봉 확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경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호봉을 재확정할 수 있다. 다만, 신규 채용 시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에 한정한다.

**제9조 (정기승급)** ① 교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최저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휴직 기간 및 징계처분(직위해제 포함)에 따른 승급 제한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- ② 교원의 호봉 승급은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한다.

**제10조 (특별승급)** 업적이 뛰어난 자 또는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는 최저 1호봉부터 최대 3호봉까지 승급할 수 있으며, 특별승급평가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**제11조 (승급제한 등)** ① 교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을 제한한다.

- 1. 징계처분, 직위해제, 휴직(공무상 질병,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.) 중에 있는 경우
- 2.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  - 가. 정직 18월
  - 나. 감봉 12월
  - 다. 견책 6월

3. 「교원업적평가규정」에서 정한 주저자 점수가 최근 2년간 15점 미만인 경우 : 12월

② 승급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급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.

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직급에서 총장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서 받은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임용 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.

### 제4장 성과상여금

**제12조 (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)** ① 성과상여금은 당해 연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S, A, B, C, D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며 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S등급 : 200%
- 2. A등급 : 150%

- 3. B등급 : 100%
- 4. C등급 : 50%
- 5. D등급 : 0%

- ② 성과 등급 산정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게시판에 공지한다.
- ③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 규정 제2조를 적용받는 교원 전원의 기본봉급, 연구보조비, 상여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한다.
- ④ 성과상여금은 2월에 결정하여 3월부터 12개월 균등분할 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해당 학년도 퇴직자는 부칙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.

### 제5장 보수 지급

**제13조 (지급방법)** ① 보수는 월 보수 총액을 매월 지정된 일자에 지급한다.

- ② 월 보수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**제14조 (기타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교직원보수규정' 및 '단체협약'에 따른다.

### 부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다른 규정의 폐지)**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「전임교원연봉제운영규정」은 폐지한다.

**제3조 (경과조치)** ① 2009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「교원트랙전환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으로 전환된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25년 11월 1일자로 연봉제에서 성과연동 호봉제로 전환되며 성과연동 호봉의 전환 기준은 [별표 5]와 같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일괄 B등급 기준으로 지급하되, 2025학년도 업적평가가 완성되는 2026학년도 3월 급여는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연봉 총액이 성과연동 호봉제 전환 이전 연봉보다 높아질 때까지 그 차액은 개인 보전 수당으로 지급한다.

**제4조 (적용례)** ① 성과연동 호봉제 적용례는 [별표 6]과 같다.

- ②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(의원면직 포함)의 성과상여금은 해당 학년도 8월에 퇴직하는 경우 잔여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, 익년도 2월에 퇴직하는 경우 잔여 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.

[별표 1] 성과연동 호봉제 월보수

| 호봉 | 기본봉급(원)   | 월봉(원)    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1  | 1,669,000 | 3,679,700 |
| 2  | 1,724,100 | 3,751,330 |
| 3  | 1,781,000 | 3,825,300 |
| 4  | 1,839,700 | 3,901,610 |
| 5  | 1,900,400 | 3,980,520 |
| 6  | 1,963,100 | 4,062,030 |
| 7  | 2,027,900 | 4,146,270 |
| 8  | 2,094,800 | 4,273,240 |
| 9  | 2,163,900 | 4,363,070 |
| 10 | 2,235,300 | 4,455,890 |
| 11 | 2,309,000 | 4,551,700 |
| 12 | 2,385,200 | 4,650,760 |
| 13 | 2,463,900 | 4,793,070 |
| 14 | 2,545,200 | 4,898,760 |
| 15 | 2,629,100 | 5,007,830 |
| 16 | 2,715,800 | 5,120,540 |
| 17 | 2,805,400 | 5,237,020 |
| 18 | 2,897,900 | 5,397,270 |
| 19 | 2,993,500 | 5,521,550 |
| 20 | 3,092,200 | 5,649,860 |
| 21 | 3,194,200 | 5,782,460 |
| 22 | 3,299,600 | 5,919,480 |
| 23 | 3,408,400 | 6,100,920 |
| 24 | 3,520,800 | 6,247,040 |
| 25 | 3,636,900 | 6,397,970 |
| 26 | 3,756,900 | 6,553,970 |
| 27 | 3,880,800 | 6,715,040 |
| 28 | 4,008,800 | 6,921,440 |
| 29 | 4,141,000 | 7,093,300 |
| 30 | 4,277,600 | 7,270,880 |
| 31 | 4,418,700 | 7,454,310 |
| 32 | 4,564,400 | 7,643,720 |
| 33 | 4,715,000 | 7,839,500 |

[별표 2] 연구보조비

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연구보조비    | 지급액(원)    |
| 1~7 호봉   | 1,180,000 |
| 8~12 호봉  | 1,220,000 |
| 13~17 호봉 | 1,260,000 |
| 18~22 호봉 | 1,300,000 |
| 23~27 호봉 | 1,340,000 |
| 28~33 호봉 | 1,380,000 |

[별표 3] 교과연구비

|       |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
| 교과연구비 | 지급액(원)  |
| 전체    | 200,000 |

[별표 4] 정액급식비

|       |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
| 정액급식비 | 지급액(원)  |
| 전체    | 130,000 |

[별표 5] 성과연동 호봉 전환표

| 성과연동 호봉 | 연봉제 호봉            | 성과연동 호봉 | 연봉제 호봉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       | 조A 1~6, 조B 1~3    | 18      | 부 19~20, 교 13~14 |
| 2       | 조A 7              | 19      | 부 21, 교 15       |
| 3       | 조A 8, 조B 5        | 20      | 부 22~23, 교 16~17 |
| 4       | 조A 9, 조B 6        | 21      | 부 24, 교 18       |
| 5       | 조A 10, 조B 7       | 22      | 부 25~26, 교 19~20 |
| 6       | 조A 11, 조B 8       | 23      | 부 27, 교 21~22    |
| 7       | 조B 9              | 24      | 부 28~29, 교 23    |
| 8       | 조B 10             | 25      | 부 30~31, 교 24~26 |
| 9       | 조B 11             | 26      | 부 32~33, 교 27~28 |
| 10      | 조B 12             | 27      | 교 29~30          |
| 11      | 조B 13~14, 부 9     | 28      | 교 31~32          |
| 12      | 조B 15, 부 10       | 29      | 교 33~34          |
| 13      | 조B 16, 부 11       | 30      | 교 35~36          |
| 14      | 조B 17, 부 12       | 31      | 교 37~38          |
| 15      | 조B 18~19, 부 13~15 | 32      | 교 39~40          |
| 16      | 조B 20~22, 부 16~17 | 33      | 교 41~47          |
| 17      | 조B 23, 부 18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[별표 6] 적용례(성과상여금이 평균 5,100,526원인 경우)

(단위 : 원)

| 변환 전 호봉          | 호봉 | 기본봉급      | S등급(200%)   | A등급(150%)   | B등급(100%)   | C등급(50%)   | D등급(0%)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조A 1~6, 조B 1~3   | 1  | 1,669,000 | 55,358,852  | 52,808,589  | 50,258,326  | 47,708,063 | 45,157,800 |
| 조A 7             | 2  | 1,724,100 | 56,251,472  | 53,701,209  | 51,150,946  | 48,600,683 | 46,050,420 |
| 조A 8, 조B 5       | 3  | 1,781,000 | 57,173,252  | 54,622,989  | 52,072,726  | 49,522,463 | 46,972,200 |
| 조A 9 조B 6        | 4  | 1,839,700 | 58,124,192  | 55,573,929  | 53,023,666  | 50,473,403 | 47,923,140 |
| 조A 10, 조B 7      | 5  | 1,900,400 | 59,107,532  | 56,557,269  | 54,007,006  | 51,456,743 | 48,906,480 |
| 조A 11, 조B 8      | 6  | 1,963,100 | 60,123,272  | 57,573,009  | 55,022,746  | 52,472,483 | 49,922,220 |
| 조B 9             | 7  | 2,027,900 | 61,173,032  | 58,622,769  | 56,072,506  | 53,522,243 | 50,971,980 |
| 조B 10            | 8  | 2,094,800 | 62,736,812  | 60,186,549  | 57,636,286  | 55,086,023 | 52,535,760 |
| 조B 11            | 9  | 2,163,900 | 63,856,232  | 61,305,969  | 58,755,706  | 56,205,443 | 53,655,180 |
| 조B 12            | 10 | 2,235,300 | 65,012,912  | 62,462,649  | 59,912,386  | 57,362,123 | 54,811,860 |
| 조B 13~14 부 9     | 11 | 2,309,000 | 66,206,852  | 63,656,589  | 61,106,326  | 58,556,063 | 56,005,800 |
| 조B 15 부 10       | 12 | 2,385,200 | 67,441,292  | 64,891,029  | 62,340,766  | 59,790,503 | 57,240,240 |
| 조B 16 부 11       | 13 | 2,463,900 | 69,196,232  | 66,645,969  | 64,095,706  | 61,545,443 | 58,995,180 |
| 조B 17 부 12       | 14 | 2,545,200 | 70,513,292  | 67,963,029  | 65,412,766  | 62,862,503 | 60,312,240 |
| 조B 18~19 부 13~15 | 15 | 2,629,100 | 71,872,472  | 69,322,209  | 66,771,946  | 64,221,683 | 61,671,420 |
| 조B 20~22 부 16~17 | 16 | 2,715,800 | 73,277,012  | 70,726,749  | 68,176,486  | 65,626,223 | 63,075,960 |
| 조B 23 부 18       | 17 | 2,805,400 | 74,728,532  | 72,178,269  | 69,628,006  | 67,077,743 | 64,527,480 |
| 부 19~20 교 13~14  | 18 | 2,897,900 | 76,707,032  | 74,156,769  | 71,606,506  | 69,056,243 | 66,505,980 |
| 부 21 교 15        | 19 | 2,993,500 | 78,255,752  | 75,705,489  | 73,155,226  | 70,604,963 | 68,054,700 |
| 부 22~23 교 16~17  | 20 | 3,092,200 | 79,854,692  | 77,304,429  | 74,754,166  | 72,203,903 | 69,653,640 |
| 부 24 교 18        | 21 | 3,194,200 | 81,507,092  | 78,956,829  | 76,406,566  | 73,856,303 | 71,306,040 |
| 부 25~26 교 19~20  | 22 | 3,299,600 | 83,214,572  | 80,664,309  | 78,114,046  | 75,563,783 | 73,013,520 |
| 부 27 교 21~22     | 23 | 3,408,400 | 85,457,132  | 82,906,869  | 80,356,606  | 77,806,343 | 75,256,080 |
| 부 28~29 교 23     | 24 | 3,520,800 | 87,278,012  | 84,727,749  | 82,177,486  | 79,627,223 | 77,076,960 |
| 부 30~31 교 24~26  | 25 | 3,636,900 | 89,158,832  | 86,608,569  | 84,058,306  | 81,508,043 | 78,957,780 |
| 부 32~33 교 27~28  | 26 | 3,756,900 | 91,102,832  | 88,552,569  | 86,002,306  | 83,452,043 | 80,901,780 |
| 교 29~30          | 27 | 3,880,800 | 93,110,012  | 90,559,749  | 88,009,486  | 85,459,223 | 82,908,960 |
| 교 31~32          | 28 | 4,008,800 | 95,663,612  | 93,113,349  | 90,563,086  | 88,012,823 | 85,462,560 |
| 교 33~34          | 29 | 4,141,000 | 97,805,252  | 95,254,989  | 92,704,726  | 90,154,463 | 87,604,200 |
| 교 35~36          | 30 | 4,277,600 | 100,018,172 | 97,467,909  | 94,917,646  | 92,367,383 | 89,817,120 |
| 교 37~38          | 31 | 4,418,700 | 102,303,992 | 99,753,729  | 97,203,466  | 94,653,203 | 92,102,940 |
| 교 39~40          | 32 | 4,564,400 | 104,664,332 | 102,114,069 | 99,563,806  | 97,013,543 | 94,463,280 |
| 교 41~47          | 33 | 4,715,000 | 107,104,052 | 104,553,789 | 102,003,526 | 99,453,263 | 96,903,000 |